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2

발의연월일: 2021. 7. 19.

발 의 자:오영환·김민철·서영교

한준호 • 이병훈 • 김홍걸

이은주 · 홍성국 · 임오경

임호선 • 윤준병 • 문정복

장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 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무연고자의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 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16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 중 "관리하는 자"를 "관리하는 자(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법 등에 관하여"를 "방법, 제2항에 따른 장례의식의 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장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 •단체에 장례의식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	16
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	
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	
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	
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	
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	아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u>관</u>
관리하는 자	리하는 자(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무
	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 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u>방법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장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
<u>는 개인·법인·단체에 장례의</u>
식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u>4</u>
<u>방법, 제2항에 따른</u>
장례의식의 절차 및 방법 등에-